

제296회 정례회
2010. 12. 14(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1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6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 수입증지 구입대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0.9.17)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2009.5.8)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신설 (안 제2 조제3항)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개정 (별표2)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 1통 600원 → 1건 8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1건 500원 → 1건 8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3,000원 → 1건 8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20,000원 → 1건 4,000원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계속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군수 신고(신청)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 삭제 (별표2)
 - 종합게임장업 등록(지정) 신청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금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0.9.17)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2009.5.8)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3항에서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
- 별표 2의 수수료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 1통 600원 → 1건 8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1건 500원 → 1건 8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3,000원 → 1건 8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20,000원 → 1건 4,000원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계속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별표 2의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군수 신고(신청)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것임.
 - 종합게임장업 등록(지정) 신청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 시장·군수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시장, 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수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u>군수가</u>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p> <p>〈<u>신 설</u>〉</p>	<p>제3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장, 군수가</u> ----- ----- ----- -----</p> <p>③ <u>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u></p>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	
4) 실적증명 (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나. 기타 제증명			
1)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1건	8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 (대통령령),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52조
2) 원자재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3)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1건	5,0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 (대통령령)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350	
3)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1건	1,000	전기사업법 제62조
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규칙 제12조
3)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4)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	50,0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 18조
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7)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7조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나) 상속 신고	1건 1건	30,000 5,000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1건	5,000 5,0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가)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사)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자)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0 45,000 30,000 25,000 20,000 15,000 50,000 45,000 30,000 25,00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가)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신고 나) 등록증 재발급	1건 1건	5,000 5,0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다. 건설관계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200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1매	5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2)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4)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마. 문화 공보관계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바. 체육시설업 관계			
1)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1건	20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2)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건	60,000	
3)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0	
4)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40,000	
5)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6)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1건	40,000	
7)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건	60,000	
8)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사. 자격시험 관련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1건	5,00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 6조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1건	8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대통령령)
아. 교통관계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대	1,400	화물자동차운수업법시행규칙 제48조, 제50조, 제52조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1대	1,400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1)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1대	400,00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1대	10,000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1대	2,000	
4)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신청	1량	2,000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200,000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5,000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1,000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신고	1량	1,00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0.9.17 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9.17.개정 (연장 → 갱신 또는 기간연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0.9.17.신설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9.17.신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181호]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서장은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 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2006.12.27. 본항개정, 2009.7. 7. 본항개정)

② ~ ⑤ (생략)